교원양성위원회규정 3-1-14

규정번호 3-1-14
제정일자 2008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(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)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고, 외부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

제5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5> <생략>

<16>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①, 제5조①·③, 제6조①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17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0> <생략>

<11>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②항의 “학적과장”을 각각 “학적팀장”으로 한다.

<12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3항)